

#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

##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

2014. 3. 31.  
행정건설위원회

### 1. 심사경과

- 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2014년 3월 21일 마포구청장
- 나. 회부일자 : 2014년 3월 25일
- 다. 상정일자 : 제186회 임시회 제1차 행정건설위원회(2014년 3월 31일)  
상정, 심사, 의결

### 2. 제안설명의 요지

□ 제안설명자 : 총무과장 이의택

#### 가. 제안이유

장기재직 공무원에게 자기계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장기재직휴가를 신설하고, 임신 중인 여성공무원에게 모성보호시간을 최대 2시간까지 부여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며, 「지방공무원 복무규정」 등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함

#### 나. 주요내용

- 1) 장기재직휴가 신설 : 장기재직 공무원에게 장기재직휴가를 부여하여 재충전을 통한 직무능력 향상 기회 제공(안 제24조제13항)
  - 10년 이상 20년 미만 재직자 : 10일
  - 20년 이상 30년 미만 재직자 : 20일
  - 30년 이상 재직자 : 20일
- 2) 산모 건강관리, 태아보호를 위해서 모성보호시간 신설(안 제24조제4항)
  - 임신 중인 여성공무원에게 1일 1시간의 모성보호시간 부여

- 단,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임신 후 36주 이상에 해당하는 여성공무원은 1일 2시간의 모성보호시간 부여
- 3) 셋째자녀부터 육아휴직기간 전부를 연가 산정 재직기간에 산입(안 제18조 제2항)
    - 「지방공무원 복무규정」 개정에 따라 셋째자녀부터 육아휴직기간 전부를 재직기간에 산입
  - 4) 연가가산 적용대상 및 인정범위 조정(안 제18조의2)
    - 「지방공무원 복무규정」 개정에 따라 재직기간이 2년 미만인 특수경력직 공무원 이외에 「지방공무원법」 제27조제2항제2호·제3호 및 제9호에 따라 임용된 재직기간이 2년 미만인 경력직공무원도 연가가산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며, 인정범위를 민간경력에서 공무원 경력 외의 유사경력으로 명확히 규정함

### 3. 검토보고 (전문위원 이진표)

- 동 일부 개정조례안은 「지방공무원법」, 「지방공무원 복무규정」 등 상위 법령개정사항을 반영하여, 장기 재직공무원에게 자기계발 기회 제공을 위한 장기재직휴가를 신설하고 임신중인 여성공무원에게 모성보호시간을 부여하는 등, 장기재직자 및 여성공무원의 근무조건을 향상하고자 하는 것으로, 그 주요내용을 살펴보면
- 「지방공무원법」 제59조, 「지방공무원 복무규정」 제7조3을 근거로 10년이상 장기재직자에 대한 특별휴가 신설(안 제24조제13항)하고
  - 「지방공무원 복무규정」 제7조의3제6항 및 「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」 제24조를 근거로 산모 건강관리와 태아보호를 위해서 임신 중인 여성공무원에게 1일 1~2시간의 모성보호시간 부여(안 제24조제4항)하며
  - 「지방공무원 복무규정」 제7조제2항제1호를 근거로 셋째자녀부터 육아휴직기간 전부를 연가 산정 재직기간에 산입(안 제18조제2항)하였으며
  - 「지방공무원 복무규정」 제7조제1항을 근거로 재직기간이 2년 미만인

경력직공무원도 연가 가산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면서, 그 인정범위를 민간경력에서 공무원 경력 외의 유사경력으로 명확히 규정(안 제18조의 2)하는 등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내용으로

- 상위법령 및 규정에 따라 장기재직공무원의 장기재직휴가와 임신 중인 여성 공무원의 모성보호시간 부여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, 셋째자녀부터의 육아 휴직기간 전부를 재직기간에 산입하는 내용으로, 관계 법령 및 공약을 해치는 요소가 없음

**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**

**5. 토론요지 : 없음**

**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**

**7. 소수의견요지 : 없음**

**8. 기타사항 : 없음**